2026년 ㈜동방 안전보건기본계획

Ⅰ. 일반 사항

1. 회사 개요

전국의 주요 항만 및 물류거점을 통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항만하역 및 육상・해상운송사업, 초중량물 운송・설치와 3자물류(3PL), 컨테이너터미널, 물류센터 운영 등의 물류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적용 범위

이 안전보건 계획은 항만· 하역, 육상운송, 해상운송, CY, CFS, 특수 Project 화물 운송, 및 기타 물류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종업원 건강 및 환경상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선박[1] 중 선박관리사가 관리하는 선박은 선박 관리사의 안전, 보건 시스템 및 관련 제 법규에 따라 관리하며, 본 안전보건계획을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Ⅱ.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경영목표

1. 개요

① 회사는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물류 서비스 수행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근로자가 안전법규 준수를 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대표이사 본인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은 작업장 내 안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 경영을 실천**하고 전 작업자가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전문화를 형성** 발전시킨다.

② 회사는 사업 및 사업장내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며 안전, 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보건관계체계 구축과 이행**과 함께 **안전, 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사항에 대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활동을 경주한다.

③ 회사는 사업 및 사업장내 안전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고위험 요인을 특별히 관리하여 위험요인과 불안전한 행동에 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과 이행**에 역점을 두고 안전관리 활동과 안전문화를 높여 아래 안전, 보건 목표와 안전, 보건 경영방침에 따라 **무재해·무사고 사업장 구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2. 안전보건 경영방침 : **안전보건 최우선 가치의 실현**

3. 안전보건목표

① 중대재해 "ZERO"

② 동종 사고 및 유사사고 재발 방지

③ 무재해·무사고 사업장 구현

---

[1] 현재 동방자이언트2호, 3호, 5호, 6호, 8호, 9호 및 동방글로리, 동방챌린저의 경우 선박관리사의 ISM Code 및 내항선안전관리체제(CSM Code)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적용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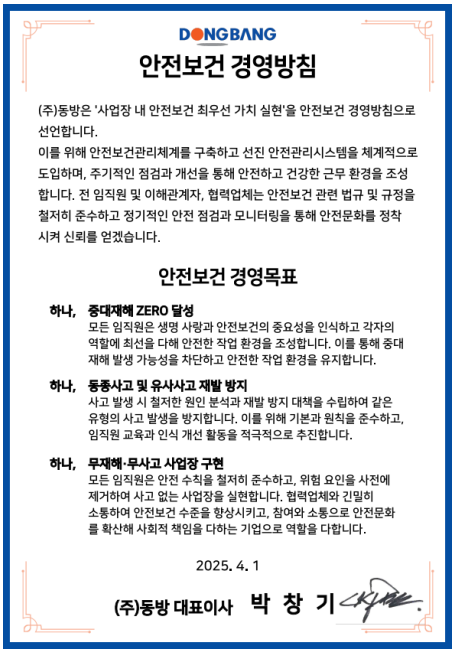

DONGBANG

안전보건 경영방침

(주)동방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 최우선 가치 실현'을 안전보건 경영방침으로 선언합니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진 안전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며, 주기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전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협력업체는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신뢰를 얻겠습니다.

안전보건 경영목표

하나, **중대재해 ZERO 달성**
모든 임직원은 생명 사랑과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합니다.

하나, **동종사고 및 유사사고 재발 방지**
사고 발생 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같은 유형의 사고 발생을 방지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고, 임직원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하나, **무재해·무사고 사업장 구현**
모든 임직원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고 없는 사업장을 실현합니다. 협력업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고, 참여와 소통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역할을 다합니다.

2025. 4. 1

(주)동방 대표이사 박 창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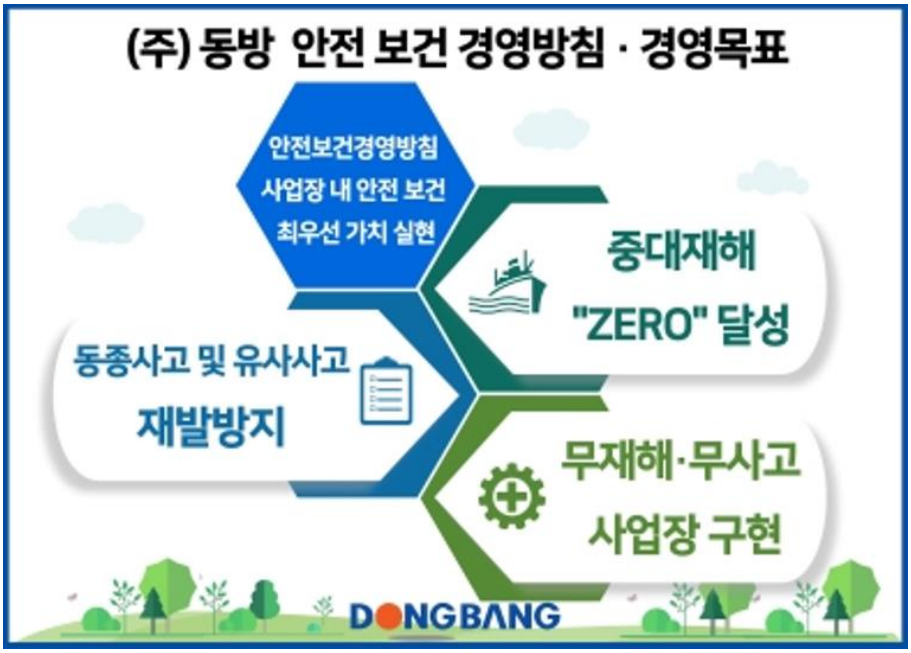

Ⅱ. 책임과 권한

1. 안전보건 조직

가. 본사에 "안전보건부문"을 두고 안전보건부문내 안전보건총괄팀을 두어 안전보건 전담기구로 전사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나. 지사는 지사장 직속 "안전보건담당" 또는 "안전보건팀"을 두고 지사(또는 영업소) 내 안전보건 전담기구로, 지사 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다. 본사 안전보건부문, 지사 안전보건담당, 안전보건팀을 통하여 전사를 아우르는 안전조직 구축한다.

2. 안전보건 조직별 주요 역무

구분	안전 전담 조직	담당 역무
본사	안전보건부문	-. 회사 안전, 보건 및 RISK 총괄 관리
	안전보건총괄팀 ▲ 안전관리 대행 ▲ 보건관리 대행	-. 회사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 및 조정 -. 산업안전보건법령 검토 및 연구(안전보건관리규정 개/폐 포함) -. 산재예방대책 수립 -. 산업안전 점검계획 수립, 점검 및 결과 분석 -. 중대재해 상황 관리·대응 -. 중대재해 원인 기획·심층분석/안전문화 확산 -. 안전투자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비에 대한 계획 및 집행(항만안전관리비 포함) -. 비산재성 사고원인 분석 및 사고 처리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준수 -. 전사 RISK 관리(안전, 보건) -. 리스크 전담 부서 -. 핵심안전보건지사 기준 정립 및 중점관리 -. 중대재해 등 이슈발생시 비상대응 조직 구성 -.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상황

지사	지사장(본부장) 직속 배속 ▲ 안전관리 대행(일부지사) ▲ 보건관리 대행	-. 지사 안전보건 정책 수립 및 조정 -. 재해예방 활동 -. 지사 자체 개선활동 실시 및 관련 자료 유지 -. 중대재해 예방 활동 - 사고분석 및 대책 수립 -. 기타 안전에 관한 조직 -. 하도급업체(협력업체) 적격성 검토 -.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상황

참고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직

직책명	본 사				지 사
		특수사업본부	해운사업부	TPL사업부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특수사업본부장	해운사업부장	TPL사업부문장	지사장
CSO	안전보건부문장				
안전보건업무총괄	안전보건총괄팀장	QHSE팀장	D.P	안전보건담당	안전보건담당/팀장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대행기관 위탁(선박 제외)				안전보건담당자
관리감독자	본사 부서장	특수사업본부 부서장	해운사업부 부서장 선장, 기관장	현업부서장 현장관리자	현업부서장 현장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	-	-	위촉자(필요시)

참고 2. 안전보건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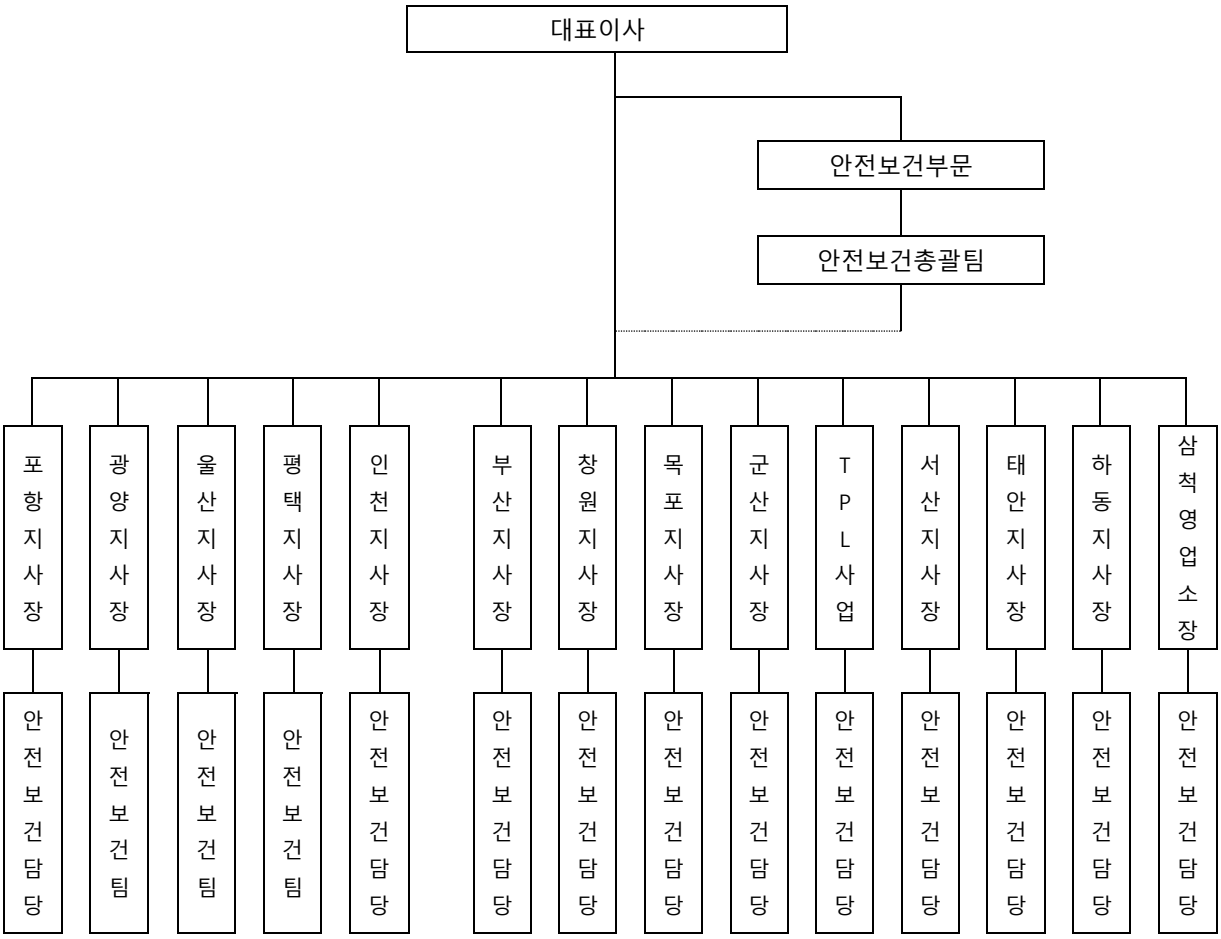

※ 특수사업본부 및 해운사업부 등 선박안전법 적용관련 안전조직 포함

※ 노조 안전관리주체 : 산업안전부장 및 분회장

3. 책임과 권한

가.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동방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전 사업장의 안전, 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 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 보건에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 품의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11) 안전, 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2) 안전, 보건관계자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13) 안전작업 표준지침의 작성 및 보완에 관한 사항

(14).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나. 안전보건부문장(CSO)

안전보건부문장은 회사의 회사 안전, 보건 환경 및 RISK 총괄 관리 및 가항의 대표이사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

다. 지사장

지사장은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을 받아, 각 지사(회사 운영 책임범위 내)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지사장의 책임하에 수행. 그 구체적 업무는 가. 대표이사의 책임과 권한 참조

라. 안전보건총괄팀장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건기구의 편성 및 관계인원의 선임에 대한 건의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방침, 계획의 수립

(3)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수칙의 작성과 이행사항 확인(사내 안전점검)

(4) 안전보건활동에 소요되는 예산반영 및 협조

(5) 안전보건관리 행정업무의 지원 및 점검

(6) 안전보건관리업무의 분석 및 대책수립

(7) 안전보건관리의 연구 발전

(8) 안전사고 조사 및 상벌 건의, 사손 처리 협조

(9) 안전회보 및 사고사례 작성

(10)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1) 회사 전체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12)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관한 사항

(13) 기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지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

(14) 광역안전 담당자 업무 관장

마. 안전보건담당

각 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안전· 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②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 품의 선정

③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④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⑤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⑥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 조언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를 위한 지도· 조언(안전분야로 한정한다)

⑧ 관계법령, 관련 규정,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⑨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2) 보건관리자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안전· 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②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③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 품의 선정

④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⑤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⑥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⑦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 지도

⑧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⑨ 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⑩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 조언(보건분야로 한정한다)

⑪ 관계법령, 관련 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⑫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 업무 및 보건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시 지사 내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는 해당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하며, 지사 내에서 (1)항 및 (2)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수행

사. 관리감독자

현업부서장 등 관리감독자로 임명 받은 자는 작업자를 직접 지휘, 감독,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사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 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안전 목표와 방침 전달

(8) 불안전한 작업방법의 개선

(9) 불안전한 행동의 시정 및 지도

(10) 사내 안전수칙의 준수 지도

(11)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아. 현장관리자(작업지휘자)

현장에 배치 받은 관리감독자,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는 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작업(운행)전 작업여건의 점검 및 응급조치(건강, 복장, 도구, 장비, 환경 등)

(2) 작업(운행)전 안전조회 및 교육실시(5~10분/안전수칙, 작업(운행)요령, 기상정보에 관한 사항 등)

(3) 필요시 안전표시 및 안전구역 설정 건의 및 실시

(4) 작업(운행)절차 및 안전수칙의 이행상태 감독

(5) 작업 간 위험(장애물)시 적절한 안전조치 후 작업지시

(6) 작업(운행)후 안전점검 및 안전업무 인계

(7) 잠재적 위험요인의 제거 및 업무수행 간 발견된 결함사항 보고

(8) 특정작업 수행 시 안전대책수립 및 안전조치

(9) 안전교육 및 행사에 적극참여 및 지원

(10) 현장작업계획서 작성 및 교육 참여자 교육 날인 확인

자. 작업자 또는 작업장에 출입하는 자

관련 법규 및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의 정당한 지휘에 따라야 하며, 안전사고발생 우려가 현저히 큰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차. 선박운영 지사, 선박 운영부서장

선박운영 지사 또는 선박 운영부서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를 전문 관리사에게 위임 시 해당 업무가 관련 법규 및 제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1) 선장의 독립적 권한 보장

(2) 사선박의 정비, 정기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상태 감독

(3) 당사가 직접 운영하는 선박의 경우 안전운항 및 선박운영에 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실시

(4)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ISM 이행상태 지도감독

(5) 선박운용과 관련된 안전관리연구 개발 발전

(6) 당사 직접 운용 선박 선원에 대한 상벌 건의

(7) 안전관리부서장이 위임하는 사항 처리

(8) 기타 선박관련법 규정된 사항 처리

타. 기타 안전 인원

기타 안전 관련한 인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당사 직무규정 업무분장에 따름

Ⅲ. 안전보건 관련 예산 투자 현황

1. 2025년 안전보건 예산/실적 및 인력 자원 현황

가. 예산 계획 대 실적

단위 : 천원

구분	안전인건비	산재보험료	안전포상	협회비	검사비	시설유지 보수비	안전장치 설치비
구분	개인보호구 구입비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안전교육비	컨설팅비용	기타 (구입관련)	기타 (그외)

① 주된 감소요인으로 시설유지보수비 및 안전장치설치, 기타 안전비에 대한 비용 감소

☞ 연속 긴급안전투자 및 항만물류협회의 국고보조금에 따른 집중 집행으로 주요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완이 일정수준이상 도달함에 따라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장치 설치 비용은 계획대비 감소함

② 항만안전관리비의 수령에 따른 집행으로 일반안전구매품 및 안전활동에 따른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음

③ 무재해달성 및 안전관리우수지사 포상, 지사 인센티브제 운영에 따른 안전포상비용 상승

④ 신규인력채용 증가에 따른 개인보호구 초도 보급 증가에 따른 보호구 구입비 증가

⑤ 환경 및 보건 관련한 정부정책 강조 이슈로 인한 관련 비용 증가

나. 인적자원 현황

구분	본사	평택	인천	TPL	태안	서산	광양	목포	군산	하동	포항	창원	울산	부산	삼척	계
전문인력																
일반인력																
안전대행																
보건대행																

☞ 안전관리자 직접 선임지사인 경우 대한산업안전협회 기술지도로 상호 보완 안전관리 중

☞ 본사,포항,평택 인원 충원 및 기존 안전관리자 정년퇴임으로 인한 담당자 신규발령(인천)

2. 2026년 안전보건 예산 및 인적자원 충원 계획

가. 안전보건 예산 단위: 천원

지사	인건비	산재보험료	안전포상	협회비	검사비	시설유지보수비	안전장치설치비	개인보호구구입비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안전교육비	컨설팅비용	기타(구입관련)	기타(그외)	합계
본사															
광양지사															
평택지사															
인천지사															
부산지사															
서산지사															
목포지사															
군산지사															
창원지사															
TPL부문															
포항지사															
울산지사															
태안지사															
하동지사															
삼척영업소															
합계															

☞ **2026년 안전보건예산은 추락, 낙하, 중기이동내 등 주요 중대재해발생원인 발생 방지 및 직원(작업자) 안전 전문화에 집중할 예정**

① 각 지사별 안전 관련 선제적 안전투자는 기 예산산정이외 추가 반영 예정

② 국가 산재예방 관련 보조금 지원 사업(30%)에 지속적인 응모 및 이행

③ 안전조직 및 인적자원 충원에 따른 안전인건비 및 산재보험료 변동가능성 있음(특고 산재보험 유동적)

④ 안전유공자에 대한 안전포상 및 행사 집행 예정

나. 인적자원 충원 현황

구분	본사	평택	인천	TPL	태안	서산	광양	목포	군산	하동	포항	창원	울산	부산	삼척	계
전문인력																
일반인력																
안전대행																
보건대행																

☞ 작년대비 동일(2025년 하반기 인원 충원 완료)

IV. 안전보건관리 실적 및 목표

1. 2025년 안전관리 실적[23] 및 분석

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 발효 이후 안전관리업무 이행상 발생하는 부적합사항 및 시정조치에 따라 당사 안전보건관리체제의 미흡한 사항의 보완을 적극적인 이행함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에 대한 안전역할의 강조와 이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안전워크숍 및 외부교육을 실시하였음.

목표	세부 내용		목표관리							모니터링
			전년 수준	금년 목표	실적					미달시 원인 및 대책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소계	달성률(%)
① 전년도 대비 사고건수 50% 감소	차량/중기사고 50% 감소	차량중기사고								
	항만하역 사고 50% 감소	항만하역사고								
	산재사고 50% 감소	산재사고								
	선박사고 무재해	선박사고								
	기타사고									
	합 계									
② 중대재해 발생 Zero화	중대재해									

<2025년 안전보건 실적>

2. 2026년 안전관리 목표

가. 안전관리 목표

(1) 안전관리 수준을 사고 발생건수를 30%로 감소로 목표로 수립, 목표 수준으로 안전사고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 작업자의 안전관리 활동 유도

방 침	목 표	세 부 목 표	목 표 치
무재해 사업장 달성	① 전년도 대비 사고건수 30% 감소		

[2] 2025년 안전관리 실적은 당사 직원, 항운노조(일용직 포함), 협력업체 사고 중 당사 사업장에서 당사와 관련된 사고를 파악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독립적 사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안전관리 목표 및 실적은 경영시스템 목표 추진실적 중 안전보건 파트만 발췌한 자료임

	② 중대재해 ZERO 달성 ③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 대응 ④ 안전교육 강화 ⑤ 협력업체 관리 강화 ⑥ 홍보활동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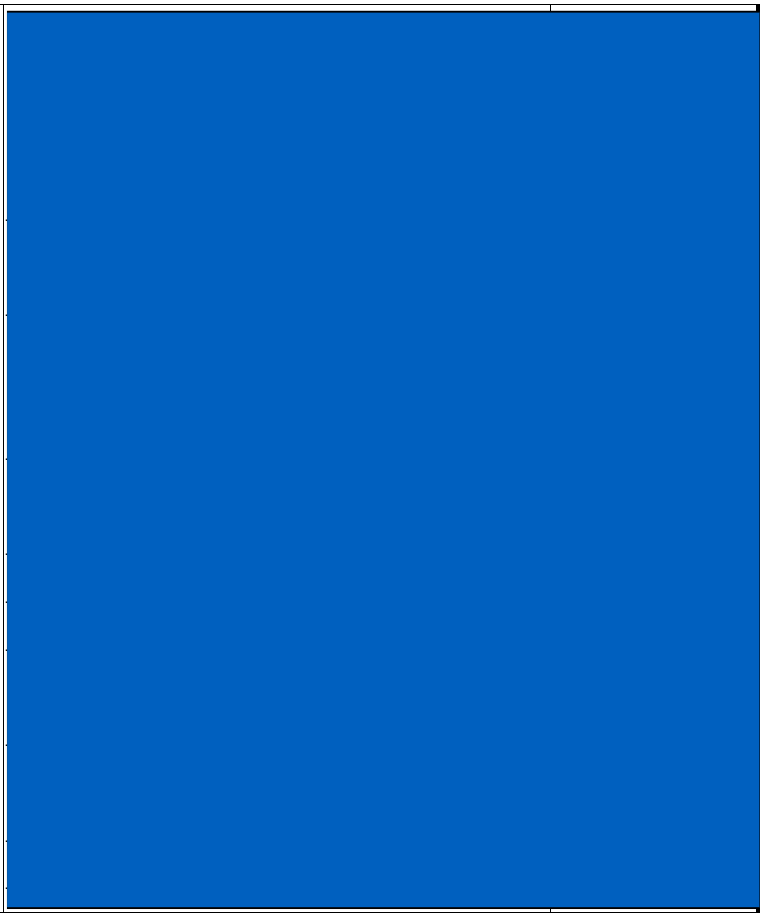

<2026년 안전보건 목표>

나. 실천 방안 :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실행 방안 참조

Ⅴ.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실행 방안

■ 중점 추진과제 1 :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통한 사고발생 30% 감소

1. 동·종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정기적 진단 실시

가. 본사/지사 전방위적인 주제별 진단/점검으로 위험요인 사전제거 목표

나. 부적합사항에 대한 즉시 시정조치 결과보고 확인 및 차기 점검시 해당 시정조치에 대한 효과성 분석

다. 부적합사항에 대한 목록화 및 위험요소 경향 분석으로 사고 원인에 대한 집중 관리

라. 외부기관(고용노동부, 수산청, KR, 화주 등)의 점검 결과에 대한 체계적 내용 관리(목록화 통합 관리)

점검주체	구분	주기	내용
본사	정기안전점검	반기	법적 이행사항 및 현장 위험요소 제거
본사	수시안전점검	수시	사고다발, 위험작업 등 특별한 사항에 대한 추가 안전조치
본사/지사	협력업체평가	반기	주요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실사, 서면)
지사	대진단점검	분기	지사 자체 사무실/현장 안전점검 실시
지사	월간안전활동	매월	전반적 안전활동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지사	중처법 이행점검	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이행사항 점검

지사	해빙기 시설물 점검	연간	해빙기 시설/화물 등 위험요소 점검 및 조치
지사	동절기 안전점검	연간	동절기 위험요소 점검 및 조치(한랭질환, 전도사고)
지사	혹서기 안전점검	연간	하절기 위험요소 점검 및 조치(온열질환, 휴게시설)
지사	화재예방 안전점검	반기	화재 대비 위험요소 점검 및 조치(전기기기, 시설)

☞ **점검결과에 따라 본사 차원 지원 또는 부적합 중대성에 따라 원인 제공자에 대한 안전징계 진행 포함**

2.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추락, 낙하, 중기이동) 예방 활동

가.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안전정책에 따라 지사/현장별 위험성평가를 실시 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원인 및 개선조치에 대한 예방 활동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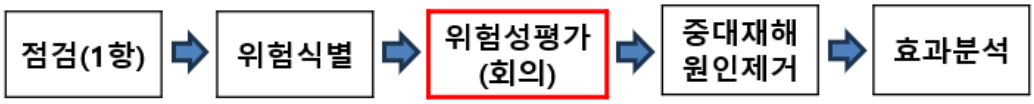

"중대재해(추락,낙하,중기이동)에 대한 기본원칙을 기준으로"

추락	떨어지지 않게 인원/화물을 묶는다.
낙하	화물 이동 반경 내에는 인원을 위치하지 않는다.
중기이동	중기 이동 반경 내에는 인원을 위치하지 않는다.

⇨ **위험성평가(회의)로**
1. **현장 특성에 맞게**
2. **탑다운형태가 아닌 참여형 형태로 대비**

나. 이행사항

① 정기적 점검의 실제적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내용 확인 및 강력한 이행 요구/제재

② 지사별 위험성평가 실질적 이행(형식적 이행 차단)

③ 현장별 추락,낙하,중기이동에 대한 실질적 예방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본사/지사의 적극적인 지원

④ 업무협조 및 이행률에 따른 신상필벌

■ 중점 추진과제 2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내실화/고도화

1. 안전보건 관련 규정/지침 최신화(제개정) 및 가이드라인 제시

가. 안전보건 관련 규정/지침이 중처법(2022년) 시행 이후 정부안전정책상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변화 및 항만안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 반영이 미흡하고 명확한 가이드가 없음

구분	보강사항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종류(4M,JSA,화주요구사항)에 대한 정립 및 현실화
협력업체평가	적격업체 평가 및 협력업체평가 방식에 대한 최신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	정식 절차편입 및 평가방식/평가항목 보완
안전관리비 지침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취합시 명확한 기준 설정
중대재해 시나리오	중대재해 상황별 시나리오 보강
중대재해 대응지침	중대재해 발생시 현실적 대응 지침 수립(부서별 대응조치)
특고 안전관리	특고에 대한 기본안전관리 서류,활동 등 안전사항 보완

신규입사자에 대한 교육시간	신규입사자에 대한 적정 교육시간 초기 부여로 전문성 확보
선박 관련 직원/작업에 대한 안전기준	해외 선박 화물감독/PM 등에 대한 법적 안전관리 기준 정립
경영시스템 통합절차서(안전지침)	안전지침(보호구,장비운행,정비,하역작업 등) 최신화
안전관리자 업무분장 기준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및 처우개선에 대한 전반적 가이드라인

☞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법령 취지상 모든 안전업무는" 절차수립"을 선행해야 하므로 안전업무에 대한 현실 반영된 근거절차 확보를 목표**

2. 작업별(화물별) 표준작업절차 작성 및 준수

가. 현상황(문제점)

① 각 지사 작업별/화물별 항만하역 및 창고, 운송 등 작업절차에 대한 명확한 절차가 미흡

② 과거부터 전해내려오는 오래된 관행적인 작업방식으로 작업이 이뤄짐

③ 신입직원 등 작업숙지 및 친숙화에 대한 기준이 부재

④ 사고발생시 또는 외부기관 평가시 관련 표준작업절차 요구

나. 작업별/화물별 작업 순서에 대한 재 정립

☞ 기본안전수칙 및 법적요구사항에 따른 최적화된 작업 순서 확정

다. 통일된 양식에 따른 표준 작업에 대한 순서상 이행 사항에 대해서 기술

☞ 작성주체 : 각 지사 현장부서 / 검토 : 지사 안전관리자 / 승인 : 본사 안전보건총괄팀

VI. 안전보건관리활동 기본 수칙 준수 사항

1. 작업장내 안전확보

가. 작업장 사전 안전점검 강화(사고 예방활동)

① 사전, 사후 CHECK-LIST를 작성 위험요소 점검 및 제거

② TBM 시 현장 작업자의 위험 발굴 활동 강화(상호 지적확인 및 위험요소 전파)

③ Check list에 따른 사전 안전 점검 실시 / 분임조 및 Near Miss를 통한 위험요소 공유

④ 고위험/초중량물 작업관련 작업 계획서 작성 시 위험요소 파악 및 작업 시뮬레이션을 통한 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및 조치

⑤ 분임조 및 잠재위험발굴 카드를 통한 NEAR MISS 발굴 강화(참여율 확대)

⑥ 위험성 평가 시, 부서장, 안전관리자, 현장 작업자 참여를 통한 실천가능성 증대(개선 계획 수립 후, 조치 사항 확인 시 현장 작업자를 통한 확인 및 효과성 분석 실시)

⑦ 작업 종료 후 CLOSE MEETING을 통하여, 작업 중 위험요소 REVIEW를 통한 안전에 대한 경각심 부여

나. 작업 중 안전관리 강화

① "SWP(Stop Working Policy)" 정착을 통하여, 작업 중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강화

② 고 위험 작업 시 지사간, 부서간 협업(지원)을 통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

③ 지속적인 표준안전작업절차 UP-DATE를 통한 표준화된 작업 절차 정립

④ 지사장 및 현업 부서장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안전의식 고취

다.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체계 수립(사고 처리)

① 안전관리자, 현업부서장 및 현장 작업관리자를 주축으로 하는 공동사고조사 위원회 구성
(필요한 경우, 본. 지사, 지사간 공동위원회 구성)

② 현장 중심의 사고조사로 객관적 사고원인 파악 및 동종사고 예방 대책 수립

③ 사고 유발자 및 관련자 현장 인터뷰를 통한 현장 작업자에 대한 경각심 부여

④ 법률 및 배상(보험) ISSUE 발생 시 신속한 의사 결정을 통한 피해 최소화

⑤ 화상 회의 시 "지사장"이 사고 내용 및 분석, 예방대책 직접 보고

⑥ 사고 보고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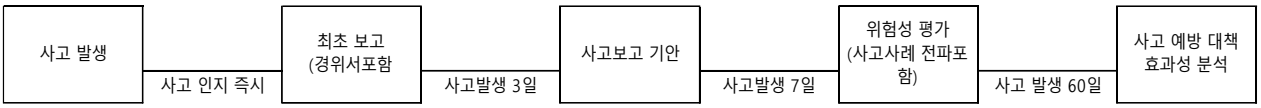

< 사고 보고 절차 >

라. 악성 재해 예방활동 강화(5대 기본 안전수칙 관련)

① 개인 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분진마스크 등) 착용 생활화

가) 개인별 / 직종별 안전장구 지급 의무화 및 안전장구 지급대장 작성

나) 지속적인 순찰 및 관리 감독으로 안전장구 중요성 교육실시

다)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사례 교육 실시

라) 미 착용자에 대한 경고장 발부(1차, 2차) 및 경고장 발부 실적관리

마) 안전장구 미착용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준용하여 과태료 발부

바) 상습 미착용자 작업장 투입 제한

사) 협력업체 및 용역업체 안전장구 착용 의무화 및 위반자에 대한 공문 발송 등을 통한 시정조치

② 중기 회전 반경내 위치 금지

가) 중기 회전 반경내 작업원들이 위치를 못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실시

나) 회전 반경내 작업 원(위치 자) 수시 지적 확인으로 경각심 고취

다) 중기 운전원은 후 시경 및 BACK-VISION 확인 철저로 후진 시 사고 예방 철저

라) BACK-VISION작동 불량 및 고장 시 점검·수리 실시

마) 작업장내 불필요한 작업차량 진입 통제 등 교통 통제 및 교통 정리 실시

바) 중기 작업 시 신호수 배치 및 위험 반경내 작업 시, 중기 가동 금지(동시 작업 금지)

사) 용 중기 투입 시 후진 벨 등 안전장치 확인 후 작업 투입

아) 작업계획서 내 위험요소 및 개선대책, 작업방법 등 병기 및 교육실시

자) 난 작업, 작업장 혼잡 시 운전원 및 관리자 연계하여 현장 및 화물 확인 철저

차) 야간 작업 시 야광 안전조끼 등 착용으로 작업자 위치 확인 철저

카) 야간 조명(75 lux) 적정성 유지 및 수리, 개선 활동 강화

타) 작업 중지를 통한 시정 사항 이행 이후 작업 재개

③ 화물 이동시 낙하물 추락 반경내 위치 금지

가) 낙하물 회전 반경내 작업원들이 위치를 못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실시

나) 낙하 반경내 통제선 설정 및 작업원 위치시 수시 지적 확인으로 경각심 고취

다) 동시 작업을 지양하고 단계 작업을 통한 작업원 통제 강화

예1) 줄걸이 이후 작업원 이동 확인 이후 권상 실시

예2) 화물 양하시 작업원 가슴 아래 위치시 접근 강조

라) 낙하 위험 반경내 GUIDE-LINE을 지정하여 통제 강화

마) 작업 전 대피구역 설정 및 작업절차 개선(지사 30cm 권상, 권하 시 화물 접근)

바) 양하기(하역도구 포함)설비 및 WIRE 이상유무 점검 철저

사) 화물 이동반경 및 양하기 회전 반경 내 작업원 위치 시 작업 금지 및 개선 이후 작업 진행

아) 작업 중지를 통한 시정 사항 이행 이후 작업 재개

④ 추락 사고 방지

가) 추락 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접근·위치를 못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실시

나) 작업원 추락 위험장소 위치시 지적 확인으로 경각심 고취

다)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안전모, 안전벨트, 사다리, 고소 작업용 이동식 탑승 설비, 간이 작업대) 착용 및 사용 철저

라) 선내 이동용 수직 통로 사용시 주의 및 조명 시설 점검 실시

마) 본선 접안 시 현문사다리 안전조치(안전 그물망, 받침대 에어프론 밀착)실시

바) 위험한 장소에는 작업원의 통행을 금해야 하고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여야 하며 통행에 필요한 안전통로를 확보

사) 위험지대 접근 자 최소화 및 접근자에 대한 지적 확인 생활화

아) 작업 중지를 통한 시정 사항 이행 이후 작업 재개

⑤ 중대재해 및 악성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 장비 지원 및 홍보활동 강화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관부서 협조를 통한 안전관리 시설, 장비 개선활동 실시

나) 작업장 주위, 출입구 입구에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부착 등으로 안전의식 고취, 의식 전환

다) 외부기관(산업안전공단, 항만연수원, 도로교통안전협회, 손해사정인, 위험관리 방재 연구소) 강사를 통한 전문교육 강화

라) 취약시간 및 휴일 시간대 교육 및 작업원 독려 실시

마) 안전 교육 시 산업안전법에 정한 직무 교육 실시 및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자료에 의한 안전교육 실시

바) 안전관리자 현업 부서 안전교육 실시(각 부서 월 1회 이상)

마. 안전사고 발생 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순찰, 점검 및 확인 감독 철저

① 지사 자체 안전 대진단(점검) 실시

가) 지사 작업특성 및 위험 실태 파악을 위해 지사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자 및 현업 부서장 등의 안전 진단반을 편성 안전진단 실시

나) 안전진단 결과 미비사항 보완 및 안전위험개소 지정관리

다) 점검시기

(1) 정기 : 반기 1회(점검 실시 후 본사 결과 1부 송부)

☞ 필요시 본사 정기안전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음

(2) 수시 : 지사장 교체 시, 중대 재해 및 대형 사고 발생 직후, 안전이슈 발생시

라) 주관 : 지사장(필요시 본사 안전보건총괄팀 실시)

② 안전 위험개소 관리(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 예방활동)

가) 안전진단 실시 후 안전위험도가 높은 개소에 대해 중점 지정관리

나) 위험 개소별로 점검카드 작성비치 및 비상계획 작성 및 교육 실시

다) 위험 개소 별 관리책임자 정·부를 임명하고 주기별로 점검을 하고 일과 후에는 경비책임자가 순찰 및 위험 지대 확인 실시

라) 안전위험개소 지정대상

분 야	대 상
시설물	노후시설 및 건물, 붕괴 위험장소 및 축대 등
위험물	인화성, 유독성 물질보관, 액화가스저장소, 화공약품 저장소
전기/장비	전기설비, 보일러실, 발전기실, 각종 육상장비 등
화재	인화성 물질 보관창고, 유류 저장소, 액화가스 사용장소, 동절기 난로 사용장소
기타	가스중독 등의 사고유발 위험장소 태풍, 돌풍 등 풍수해에 대한 예방 관리 활동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

③ 지사장, 현업부서장, 안전관리자 안전순찰 활동 강화

가) 목적 : 지사장, 현업부서장, 안전관리자 현장 순찰을 강화, 작업 중 문제점을 현장에서 즉시 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

나) 방법 : 현장 순찰 시, 현장 순찰일지 작성 및 위반자에 대한 경고장 발부

다) 보고 : 월 안전보고시 실적 보고

- 주기적 안전순찰 일지 작성(안전관리시스템 및 별도 양식 사용)
- 일일 안전보고 작성시
  - ⅰ. 전일 안전관리 활동 내역
  - ⅱ. 익일 안전관리 활동 계획 보고
  - ⅲ. 주요 개선현황 보고(본사 안전관리 우수지사 평가 시 반영)
- 월간안전관리 종합보고 시, 지사장, 현업부서장, 안전관리자 순찰 실적 및 개선사항 보고

④ 안전관리자 법정 필수 안전보건 업무 수행시간 준수

가) 업무수행 최소 시간 : 연간 585시간

나)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경우 연간 685시간

바. 위험성 평가 실시

① 목적 : 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안전관리자, 현업부서장 현업 근무자가 발굴 평가하여,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② 방법 : 작업을 단계별로 구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빈도, 각성을 평가하여 이를 종합적 고려 위험성을 평가 (ISO45001위험성평가 절차서에 따라)

③ 시기 : 연1회 이상(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1회 이상)

④ 위험성 평가시 부서장, 안전관리자 외 현업 작업자가 참여 위험성 평가→개선활동→재평가→개선활동 선순환 구조 구축

⑤ 정기, 수시 위험성평가시 해당 작업에 관련 있는 작업자 등 종사자 참여 필수

⑥ 위험성평가 주관 주체(지사장)은 위험성평가 외부교육 수료

사. 동종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확한 사고조사 및 사고사례 전파

① 사고조사

가) 사고발생시 안전관계자를 포함한 사고조사반 구성, 조사 실시

나) 사고조사반 임무: 사고진상 조사,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사고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 제시

② 사고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 강구

가) 사고발생 직·간접적 원인 및 배경 등 원인분석 철저

나) 사고 재발방지책에 대한 적절한 대책 제시

다) 사고발생지사 및 영업소는 안전관리평가 회의 시 사고사례 발표

③ 동종 안전사고사례 교훈 적극 활용

가) 사고 교훈이 우리 회사에 해당되는지 확인 및 사고요인 점검

나) 사고 발생요인 제거로 동종사고 재발 방지

다) 안전문화방 이용 동종사고사례 보고 및 전파

라) 매 사고 발생시 해당 부서장은 사고 이후 반드시 사고사례를 발표 및 위험성 평가 실시 후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 및 시행효과 분석

마) 동종사 안전사고 사례 수집 및 전파로 동종사고 예방

④ 중대재해 및 피해 금액이 큰 경우 안전보건총괄팀 현장 사고 조사 동행 실시

⑤ 산재 은폐 방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은폐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와 해당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에 따라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산재기준(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으로 산재 발생시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철저(중대재해시 즉시 보고)

⑥ 산재 미보고 방지

산재 은폐를 방지하고자 반드시 사고 발생시 안전사고 처리 규정에 의거 신속히 보고할 것

⑦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보고 철저

-. 사망사고

-. 3개월 이상의 요양 부상자 동시 2명이상 재해 / 동일사고 6개월이상 치료 부상자 2명 발생

-. 부상자 및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유해요인 급성중독 직업성 질병자 1년이내 3명이상 발생

⑧ 동종사고 및 유사사고 예방과 방지를 위해 대변혁 프로그램을 통해 사고 예방 및 활동 전개 실시

아. 기타 안전관리 강화

① 현장 및 안전관리 활동 강화

가) 중요, 위험 작업 등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작업은 지사장 및 현업부서장, 안전관리자에 의한 안전관리 강화

나) 고난도 작업 시 본사 안전보건총괄팀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강화

② 계절 특성 별 안전관리 활동

가) 각 지사(영업소) 계절(기후) 특성에 맞는 안전 대책 수립

나) 동·하절기 대비 작업장 지사 자체 안전점검 실시 및 사고예방 강조 공문 발송 (연 2회)

다) 하절기 재해예방 대책

ⅰ. 태풍(돌풍) / 호우 예보 시 사전 안전점검 실시

-. 점검 대상 : 화물 복포, 결박 이상 유무, 시설물 이상 유무 상태, 배수로 상태, 컨테이너 야적, 결박 이상유무 상태, 창고(시설물) 안전 상태, 외부차량 통제, 안내판부착, 기타 위험요소 사전 제거

-. 대피 계획 : 장비 및 선박 대피 계획 및 긴급 조치 계획 수립

※ 조치 시 반드시 사진 촬영 등 조치 내용 증거 보관

ⅱ. 기상 특보 발효 대비 비상 근무계획 수립 및 대상인원 교육 전파 사무실 게시

-. 비상 근무 시 순찰, 상황 일지 수시 본사 보고

-. 피해 발생시 본사 보고 이후 사고 접보 및 손해 사정인 현장 검정 확인

-. 기타 긴급 사항 대비 업무 지속 계획 수립

라) 동절기 재해예방 대책

ⅰ. 화재폭발 예방 대책

-. 난방기구 주변 유류 및 가연성 물질 방치 금지

-. 승인된 난방용 전열기 사용 및 문어발식 배선사용금지

-. 화기주변 출입구 주위에 소화기 및 방화사, 방화수 비치

-. 난방기구가 켜진 상태에서 주유 절대금지

-. 화재시 대피 및 소화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ⅱ. 전도붕괴 예방 대책

-. 적설 및 결빙유무 확인하여 결빙부위 모래·부직포로 미끄럼 방지 조치 혹은 염화칼슘 등 제설제 살포

-. 노면수 유입방지 및 배수시설 설치

-. 적설량이 많을 경우 하중에 취약한 가설구조물에 쌓인 눈(snow) 제거

ⅲ. 건강장애 예방 대책

-. 방한복 지급 및 온음료 수시 제공

-. 작업전 충분한 체조 및 발과 다리를 움직여 혈액순환을 원활히 함

-. 젖은 상태의 신발·장갑 착용 금지

-. 혹한 시 과다한 음주 및 흡연 금지하고 충분한 영양 섭취

③ 하역도구 점검

가) 점검대상 : 벨트, 와이어로프, 샤클, 훅크, Damping 등 기타 하역도구류, 하역장비(크레인 wire 등)

나) 점검횟수 및 방법 : 매월 1회 / 육안 검사, 시약 검사,
분기 1회 / 시약검사 및 동영상 촬영,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점검

다) 보고대상 : 전지사/영업소(점검대상 하역도구를 사용하는 지사, 영업소)

라) 보고마감일자 : 매월 월간 안전관리 종합보고시 첨부

마) 접수처 : 본사 안전보건총괄팀

④ 잠재위험 발굴 카드 및 분임조 활동 강화

가) 월 1회이상 잠재위험 발굴 카드 및 분임조 활동 실시

ⅰ. 현장 작업자 참여로 작업장 내 안전의식 고취

ⅱ. 잠재위험 발굴 카드 및 분임조 활동 결과 위험성 평가 시 반영

⑤ 동종사, 외부기관(산안 공단, 물류협회 등) 연계를 통한 항내 산재사고 발생 억제

가) 개별적 산업재해 예방활동 외 항운노무원 산재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방안 수립

나)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공동 항내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추진

⑥ 안전관리 집중제를 통한 지사(영업소)별 자율 안전관리활동 강화

가) 실시시기 : 반기 1회(상/하반기 각 1회)

나) 실시내용 : 지사의 안전관리 중점 현안을 선장 일정기간 동안 현안에 대한 해결에 집중함으로써 위험요소, 안전장애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

⑦ 업무용 차량 운행 관리 강화

가) 안전교육 시 "안전운전 교육" 병행실시

나) 차량사고 유발자에 대한 업무용 차량 운행 제한

다) 업무용 차량 운행 시 업무 외 불필요한 운행 절대 금지(운행일지 작성)

라) 차량 운행자 대상 주기적 교통법규 숙지 등 안전교육 실시

마) 지사(영업소) 현실에 맞는 업무용 차량 관리 지침 작성 및 전 직원(업무용 차량 운행자) 교육 전파

바) 취약 시간대 운행 제한 및 취약 시간대 운행 시 교통법규 준수

사) 차량 운행 전 예방점검 철저 및 각종 차량 비품 이상 유무 확인

아) 업무용 차량 사고 유발자에 대한 운행금지 조치 및 사고자 "필벌" 강화

자) 음주자 및 무면허자 차량 운행 금지 및 감독 철저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해당자 엄중 문책

차) 업무용 차량 사고자 수시 혹은 분기별 사고 사례공고

⑧ 시설물 안전관리 조치

가) 전기 안전을 위한, 정격용량 준수 및 전선 상태 학인

나) 화재 예방을 위한 위험물(가연성물질 등) 제거 및 작업장 내 금연 준수

다) 소화기 등 소방시설 점검 철저(수시 및 정기점검 실시)

라) 창고 내 파렛트 / 렉 등 수시 점검

마) 창고 내 장비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및 수시점검 실시

바) 기타 시설물 점검 및 위험요소 확인 및 보수(개선) 시행

사) 법정 교육 준수(방화관리자/위험물관리자/전기안전관리자 2년 1회 이수)

아)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안전장구, 작업방법 외) 및 점검

자)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합 합동 물류시설 전반 종합 위험성 SURVEY 실시

⑨ 건설기계(지게차 등) 구조변경 금지

가) 주요장치 변경/개조시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따른 신고/승인 후 사용

→ 지게차 적재함의 용량 증가(오무리,웨이트 설치)를 위한 구조변경 불가

⑩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금지

가)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변조 금지

나) 운행 전 등록번호판 및 외관상 이물질(스티커, 진흙, 화장지 등) 제거

다) 최고속도 제한장치 임의해제 금지

⑪ 작업장내 안전 조치

가) 작업장 바닥의 미끄럼 방지와 안전통로 확보(구분), 정리정돈 실시, 안전표시 등에 관한 기준 설정(표시)하고 주기적으로 유지·보수 및 점검 등 적절한 현장관리를 실시(산안보건규칙에 의거)

나) 중량물·운반기계(중기)에 대한 안전조치

ⅰ. 운반기계(중기)별 안전기준 및 업무사항을 철저히 숙지 시키고 이행여부를 수시로 관리, 감독

ⅱ. 지게차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양중기 사용 작업 시 운행경로, 작업방법 안전조치 등이 작업 전 작성되고 유지·관리[작업 전 작업계획서·교육일지 작성 및 교육 실시(피교육자 서명확인)]

다)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및 자체 점검실시

ⅰ. 기계·기구 기타 설비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방호조치하고 잠재위험이 없도록 보수·점검 등을 실시하고 안전수칙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 경각심 유발

ⅱ.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ⅲ. 자체검사 대상이 파악되고 유자격자가 검사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유지·관리

⑫ 쾌적한 작업환경 유지활동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 장해 및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건강 검진 및 보호구 착용에 만전을 기한다.

나) 취급 유해물질을 목록화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 또는 게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

다)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리적 인자(소음, 진동, 유해광선 등) 및 화학적 인자 (분진, 유기화합물, 중금속, 산·알카리 등) 등의 유해인자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적절한 개선 조치

⑬ 근로자 건강 장해 예방 활동

가)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적절한 사후조치 실시

ⅰ. 사무직:2년에 1회이상, ⅱ. 현장직:1년에 1회 이상

☞ 단 지사 사무직의 경우 장비, 작업 현장과 인접 및 현장과의 업무연관성에 의해 현장직으로 간주.

☞ 특별검진대상 : 유해,위험물 취급자, 유해인자 노출자, 야간 교대근로자 등

야간 교대근로자 특수건강검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 유해인자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작업에 종사하는 자 중

①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②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치료 및 투약 등)

다) 검진 대상자는 반드시 확진검사까지 실시 권고

라) 보건협회 및 의사를 통한 건강 상담 및 질병 유소견자 관리 철저

마) 작업환경 측정 대상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실시 및 결과 관련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 및 게시

자. 근로자 작업중단 및 대피

작업장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 작업중단, 대피할 수 있음을 명시 및 근로자에게 알리고 합리적인 이유 있을 때 이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차.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이행 여부 점검

① 본사 전담 조직은 첨부 "안전, 보건 이행 여부 점검 리스트"를 통해 각 작업 현장의 법령 준수 및 이행 사항을 통해 사고 예방 및 안전, 보건 법령을 준수

② 시행 주기는 매 반기 각 지사 1회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사고 다발 및 중상해 재해 발생시 특별 조사를 실시 고려

2. 안전교육의 강화

가. 현장 중심적 안전교육 실시

① 본사 안전보건총괄팀 주관 지사 안전교육 실시

② 지사 작업 현황에 맞는 안전교육 교보재 개발 활동 지원

③ 사고 사례 교육(발표)를 통한 안전 경각심 부여

④ 본사 및 현업 관련 임원, 현업 팀장 관리 감독자 교육 의무화

⑤ 작업환경별 안전교육 실시 및 분임조 회의 및 NEAR MISS를 통한 위험성 DATA 축적

⑥ 안전 교육자료 작성 시 현장 작업자 참여로 해당 작업장에 적합한 안전교육 실시

⑦ 안전보건총괄팀 주관 지사 요청 및 정기 안전점검시 안전교육 실시

⑧ 안전작업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필수 숙지 사항에 대한 교재 작성 및 배포

나. 계절변화 및 자연재해에 따른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① 폭염,한파,황사(미세먼지),낙뢰,지진,태풍(강풍),집중호우(대설) 등 상황에 따른 자연재난행동요령 전파

② 위험요인에 따른 사전 사고예방 조치 이행(현장 에어컨 및 난방기 설치된 임시장소 설치 등)

③ 건물, 담벼락, 창고 등 부실 시설물 식별 및 보수 공사 이행

④ 기상예보 및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정기적 전파

⑤ 상황 발생시 실시간 기상특보 및 각 지사 상황 전파로 전사적인 현장 대응 지원

다. 안전사고 관리(예방)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현실화

① 정기교육(산안법에 준한 교육 내용 전파)

가) 육상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교육과정	주관자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
정기 교육	지사장 · 영업소장	근로자	현장근로자 12hr/반기 이상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한파작업 포함)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사무직 근로자 6hr/반기 이상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규 채용시		신규 채용근로자	1주이하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1주~1개월이하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근로자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이외: 2시간 이상	- 신규채용시 교육내용과 동일
특별 교육		산업안전 보건법에 규정된 작업 종사자	16시간 이상 또는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 공통내용: 신규채용시 교육내용과 동일 - 개별내용: 지정 작업과 관련된 안전보건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에 따름)

나) 관리감독자 교육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내용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한파작업 포함)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채용시교육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육상직원 안전보건교육(채용시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기준 동일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
특별교육	육상직원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기준 동일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교육

교육대상	신규교육	보수교육	교육내용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6시간	6시간	-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위탁함)	34시간	24시간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재해 발생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 항 -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 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내용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2시간 이상 또는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 1시간 이상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또는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 공통내용: 신규채용시 교육내용과 동일 - 개별내용: 지정 작업과 관련된 안전보건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에 따름)

마) 항만운송종사자 안전교육(항만안전특별법)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신규안전교육	신규 항만운송종사자	7시간	한국항만연수원 항만안전교육포털 인터넷 교육	일반부두 및 컨테이너부두 항만안전
정기안전교육	재직 중인 항만운송종사자	4시간		
기초안전교육	7일미만 작업 항만운송종사자 (일용직)	10분		

바)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반기 1시간 이상	집체교육/외부교육 등	추락, 낙하, 중기반경내 위험요소를 포함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절차, 예방에 관한 내용

☞ 중처법 시행령 제5조 2항 3조에 따라 법령의무교육에 대한 이행여부 반기1회 점검 포함

사) 위험성평가 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위험성평가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최초 1번	외부전문교육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외부교육기관의 위험성평가 교육

아) 선원 안전교육 (관련근거 : 선박절차서, ISM CODE, 해상교통안전법, 해사안전기본법 등)

교육훈련명	주관자	대상	실시횟수	실시시간	교육훈련내용
국제충돌예방법규	선장	관계 승조원	1월1회 이상	1시간 이상	- 국제충돌예방법규 내용 교육
퇴선훈련	선장, 기관장	전 승조원	1월1회 이상	1시간 이상	- 구조정의 준비, 강하, 기관시동 및 조작, 승조원의 배치, 비상조명의 사용
	선장	전 승조원	1월1회 이상	1시간 이상	- 팽창식 구명뗏목강하 및 승조원의 배치
	선장, 기관장	전 승조원	3월1회 이상	1시간 이상	- 구조정의 진수 및 조선, 승조원의 배치
인명구조 훈련	선장	전 승조원	3월1회 이상	1시간 이상	- 인수자 발생시의 부서배치, 수색 및 구조 작업, 구조조타 및 환자 응급조치
소화, 방수 훈련	선장	전 승조원	1월1회 이상	1시간 이상	- 방화문의 폐쇄, 소화설비의 조작, 수밀문의 폐쇄장치 조작, 승조원의 배치
비상조타 훈련	선장 기관장	전 승조원	3월1회 이상	1시간 이상	- 조타설비의 비상시 조타, 조타실의 현장제어, W/H와 타기실간의 통신시험, 대체동력의 작동실험

구명설비 교육	선장	전 승조원	승선즉시	1시간 이상	- 구명설비 및 소화설비의 작동법 교육
기름유출사고 비상훈련	선장	전 승조원	1월1회 이상	1시간 이상	- 가상 유출사고에 대한 비상방제 대응훈련 - 유류 오염 방지자재 사용방법 - 연락처 점검 및 방제 대응요령
육,해상 합동 비상대책훈련	선장	전 승조원	1년1회 이상	1시간 이상	- 선박에서 임의로 설정한 모의비상사태에 실제상황과 똑같이 육해상 합동으로 대응하는 비상훈련
오염 방지교육	기관장	전 승조원	1월1회 이상	1시간 이상	- MARPOL 73/78협약, 해양오염방지법 숙지 - 연료유 안전수급 요령, 기름배출방지 요령 유출시 각자의 임무 및 배치장소, 유출 최소화 조치, 세척물질 사용 - 폐기물관리 계획서 및 SOPEP의 내용 등을 교육하고 해양오염방지교육일지에 별도 기록
안전교육	선장	전 승조원	1월1회 이상	1시간 이상	- 안전수칙 교육, 소화설비 및 안전설비점검 및 사용법, 응급조치 등을 교육하고 안전교육일지에 별도 기록
시스템 교육	선장	전 승조원	6월1회 이상	1시간 이상	- 안전경영시스템에 대한 교육
충돌, 좌초 주기관 고장 등 비상대응훈련	선장	전 승조원	6월1회 이상	1시간 이상	- CHECK LIST를 참고하여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

사) 기타 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경영목표 교육	전직원	1시간 이내	집체교육	연간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경영목표에 대한 취지 및 내용 교육
MSDS교육	취급자	1시간 이내	집체교육	취급화학용품에 대한 위험성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

② 수시 교육

가) 작업 전 반드시, 그 날 작업에 대한 내용 및 작업 방법, 위험요소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

나) 중대사고, 대형사고가 발생시 사고사례, 예방개선대책을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 안전의식 강화

다) 신규채용자, 전입자에 대해서 지사(영업소) 임무 및 특성, 안전 법규, 규정 지침, 제도, 재해위험요소, 경험담, 사고사례 및 교훈 등 지사(영업소) 전반에 대해 안전교육 실시

③ 교육실시 결과보고

가) 보고대상 : 전 지사 및 영업소

나) 보고마감일자 : 매월 초(월간 안전종합관리 보고시)

다) 접수처 : 본사 안전보건총괄팀

라) 기타 : 월간교육 외 신입사원 및 전직자 등 교육 사유 발생 시, 사유 발생 후 5일 이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사 안전보건총괄팀에 교육 실시 후 월간 안전보고 시 보고

마)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1회 법정교육에 대한 점검이행을 위한 교육이행현황 반기별 제출

3. 협력업체 관리 강화

가. 도급인 책임 강화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강화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하여야 할 장소가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의 실질적인 지배, 관리하는 모든 장소로 확대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규정에 안전관리 및 협력업체 관리 철저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활동 보장

② 협력업체 표준 안전수칙 교육 강화 및 작업장내 안전사고 예방 관리 활동 독려

③ 협력업체 직원들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발생시 벌점 부여를 통한 경각심 부여

④ 공동 안전 점검 및 순찰 시 협력업체 안전관리 활동 능력 수시 검증

⑤ 협력업체 적법/적시 안전관리활동 이행 실적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협력업체 평가

⑥ 협력업체/항운노조 대상 합동 안전교육 실시 추진

⑦ "용중기" 투입 시 당사 규정에 적합 한 CHECK-LIST를 통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

⑧ 안전관리 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업체에 대한 개선 요구 및 계약 해지 검토

⑨ ISO45001 "DB-HSEI-21 협력업체 관리 지침서"에 의거 업체 평가 병행 실시

⑩ 협력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 지원

나. 위수탁(용차) 차량 및 운전원 관리 철저

① 위수탁 차량 사고분석을 통한 차량별 ONE-POINT 관리(지사중심에서 차량중심의 사고분석)

② 위수탁 기사 대상 정기적으로 차량 안전교육 실시(교통법규, 사고사례 등)

③ 사고 다발 차량에 대한 재제조치 강화(배차 제한, 경고장 발부, 외부 교육 참석 조치 등)

④ DTG(Digital Tacho Gragh, 디지털운행기록계) 분석에 따른 과속, 무 휴식 장거리 운행 등 사고 위험 인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개선조치(결과분석 등)

다. 항운노조/일용직 안전관리 강화

① 항운노조 및 일용직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TBM시 위험요소 및 작업방법 등 교육 실시)

② 적법한 작업 지시 위반자 작업장 내에서 배제(임의 행동, 안전장구 미착용 등)

③ 협회 등을 통한 항운노조 대상 안전교육 정기적 실시

④ 사고 유발 요인자 파악 및 작업장 투입 배제

라. 도급사업 안전보건 조치 사항 이행 철저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및 직무 사항

②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관리

③ 도급인 사업주에 의한 정기적인 안전보건 점검 및 작업장 순회 점검

④ 수급인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 확인

⑤ 필요시 작업환경 측정 실시

구 분	안전보건 수행 활동
도급사업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위험성 평가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산업재해 위험 예방조치
	안전작업 허가제 운영

	안전보건 교육 지원·지도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안전보건 정보제공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 및 관리

4. 유해 위험물질 리스크 감소 및 안전사고 처리능력

가. 위험화물(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지침 준수

① 위험화물 취급시 관련 법규(지침)의 안전관리 이행 사항 중점 점검.

② 소방, 안전, 방제 장비 및 시설 점검 실시 및 법정 비품 비치

③ 지사 상황에 맞는 비상대응 훈련 및 교육 이행 여부 중점 점검

④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직무) 및 교육 이수 철저 → 특수 화물 취급에 따른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 등 전문 교육 실시

나. 화학 물질(유해·위험 화물, IMDG CODE) 안전관리 철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산적 액체)을 운송하는 총톤수 5만톤 이상의 선박이 접안하는 돌핀 계류시설의 운영자는 위험물 운송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하여 하역할 수 있는 안전장비(선박접안속도계, 계류시설 충격시 자동경보시스템, 위험물 차폐 자동차단밸브)를 갖추도록 할 것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항만안전특별법에 의거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작성

②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에 의거 하역 시 안전관리자 상주 및 위험성 제거

③ 위험물의 하역, 저장, 운송, 취급 철저 및 비상대응 훈련 실시

④ 작업자들에 관한 법정 교육 및 작업원 전문 교육 강화(대, 내외 교육 실시)

⑤ 각종 보호장구, 소화 설비 및 설비 구비 및 점검 철저

⑥ 취급화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비치

⑦ 불안전한 요소 발견시 보고체계 및 처리(방제) 방법에 관한 대응 체계 철저

⑧ 해당 물질 취급 전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GHS-MSDS) 교육 실시

⑨ 선박과 육상간의 통신 수단 확보

⑩ 위험 표지 및 출입통제 시설의 설치

⑪ 안전에 필요한 시설, 인원, 장비등을 보강 및 개선

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① 작업원에 대한 위험물 교육 실시 및 일지 작성 유무

② 비상대응 훈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의거) 실시기록

③ 위험물 일람표 저장, 출력 보관 사항

④ 위험화물의 경우 장치장 허가가 나지 않은 지사의 차상(車上) 직반출, 직반입 사항

⑤ 과거 3년간 취급 위험 화물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출력하여 취급자 교육 실시 기록

⑥ 소화기 등 방제 장비 점검 사항 등

라. 외래종 유입으로 인한 생물학적위험 예방 철저

① 항만에 유입되는 외래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철저

② 외래종 등의 유입 발견 시, 관련절차에 따라 조치(방역당국에 신고 등)

마. 비상 대응 능력 강화

① 지사(사업장) 별 재난, 재해 대비 계획 수립 및 훈련 계획 수립

② 각종 사회적 이슈 재해에 대비 비상 훈련 실시(년 2회 이상)

③ 각종 대형 재난, 재해 발생 대비, 안전교육 시 부서별, 개인별 임무 반복 교육

④ 사회적 이슈가 되는 대형 재난, 재해 발생 시, 사고 사례 참조하여 일체 점검 실시

바. 비상대응 훈련 실시

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8항 및 당사 규정"중대재해발생 조치 대응 예방 매뉴얼"규정에 따라 교육 및 훈련 실시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현장직원 대상 비상사태 발생 대응훈련, 교육을 통하여 재난 및 사고발생시 대처

사. 소방 대상물의 화재, 재난, 재해 예방 철저

① 소방 계획서의 작성 및 이행 여부

②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의 일반 현황 파악

③ 소방 및 방화 시설의 현황 파악

④ 자체점검계획 및 화재진압 대책

⑤ 소방 및 피난, 방화 시설 점검, 정비 철저

⑥ 화재 및 비상 훈련시 피난 계획 및 대책 사항 적절성

⑦ 소방 교육 훈련 계획 및 실시

⑧ 자위 소방대 구성 및 임무 부여

⑨ 위험물 저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등 안전성 확보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 평가

가. 평가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나. 평가주기

안전보건과반기별 의무이행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반기마다 평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1차 자체 평가후 본사 안전보건부문장 검토후 대표이사 최종 평가

② 관리감독자는 1차 자체 평가후 부서장이 검토후 지사장 또는 담당임원이 최종 평가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관리감독자와 동일하게 하되 위탁업체인 경우 평가를 제외할 수 있음

다. 평가방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월간안전활동 자료의 수행평가로 갈음. 단, 월간안전활동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는 별도 양식을 통해 평가

②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별도 평가 양식을 통해 평가

라. 평가결과조치

① 평가 후 평균점수가 미흡인 경우 평가지표상 이행사항을 상세별로 점검하고 재평가

② 재평가 결과 미흡인 경우 별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차기 평가시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

5.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반기별 의무이행 관련 증빙 취합 및 경영책임자 보고

①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및 목표

② 안전보건업무 총괄 관리 전담 조직

③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각 담당자에 대한 예산 및 권한 부여

④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배치(안전 및 보건 대행 포함)

관련근거	조치사항 및 제출내역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3항 (유해위험요인의 업무 절차 마련 및 개선 조치 점검)	위험성 평가 절차서(DB-QHSEP-03)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서 제출 ①위험성평가 표지 제출(참여자 서명) ②분임조 회의록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사항 적용 ③위험성평가에 따른 교육 일지 작성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5항 나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 관리 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 수행평가 제출 ①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표 양식에 따른 평가 ②안전관리자 업무수행 평가표 양식에 따른 평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7항 (종사자의 의견 청취절차 마련, 이행·조치 점검)	종사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 ①도급협의체 회의록 제출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제출 ③분임조회의록, 잠재위험발굴카드 제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8항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작성 및 조치 점검)	중대산업재해 관련 시나리오 작성 및 배포, 훈련 실시 비상대응훈련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9항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 절차 및 이행 점검)	비상대응절차서(DB-QHSEP-26)에 따른 협력업체평가 결과 제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1항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점검)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본사 정기안전점검 실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3항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여부 점검)	하역작업 지침서(DB-HSEI-14) 등 안전, 보건 교육자료에 대한 교육 실시 후 교육 일지 제출